

의안번호	
의 퇴 인	고민정 의원
회 답 일	2024.12.10.
추계번호	24C4343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이외의 ‘국·공립대학 기숙사·합숙소와 국·공립유치원’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83억 9,900만원(연평균 136억 8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(국공립 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 및 국공립 유치원 안 제10조의3)	33,880	34,519	—	—	—	68,399	13,680

주: 1)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은 교육부가 제출한 국공립대학교 학생기숙사와 국공립 유치원 중 (간이)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동수에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]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인 연면적 5,000㎡(대학교기숙사), 300㎡(유치원)미만 중 최댓값을 적용
2)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단가는 소방청에서 제출한 지원사업 단가를 준용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20181호 ¹⁾ 안 제10조의3 (소방시설 설치지원 등)	(제1항)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²⁾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4.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 5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	의무규정

		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시설 (제2항)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(제3항)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	
--	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법률 제20181호 안 제10조의3 (소방시설 설치지원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기존 ‘신설되는 유치원, 초·중등학교 기숙사 등에 (간이)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’하도록 하던 규정 중 ‘신설’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‘교육시설’에 (간이)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임
- 개정안 부칙에서도 해당규정을 법 시행 당시 설치된 교육시설에 대해서도

1) 2025.2.7. 시행

2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

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이때 소방시설은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음(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)

- 2025년에 시행될 (간이)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체적 기준은 ‘대통령령’에서 규정될 것이나, 2024년 현재 해당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법률 제20181호의 제안이유³⁾ 등을 감안하여 현행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설치된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교육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
- 현행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의 6층 이상, 연면적 5000㎡이상 기숙사, 바닥면적 합계 300㎡이상 노유자시설(유치원) 등에는 (간이)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
 - (초·중등·특수학교) 교육부는 (간이)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 연면적 5000㎡미만 초·중등학교 기숙사와 5층 미만 특수학교 등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 완료할 예정임
 - (유치원 및 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) 법 제10조의3각 호의 교육시설 중에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과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는 해당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2024년 기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‘국·공립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’ 및 ‘국·공립 유치원’에 ‘간이스프링클러’를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
 - － 대학 기숙사와 유치원 중 (간이)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통계는 교육부 제출자료를 활용하며, 통계 부재로 ‘국공립’시설에 대해서만 추계함
 - －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의 평균 면적에 대한 가용자료 한계로 본 추계서에서는 소방관계법령상 (간이)스프링클러 미설치 최대면적인 4,999㎡(대학기숙사), 299㎡(유치원)를 미설치 건물의 평균면적으로 계산
 - － 대학기숙사와 유치원 중 (간이)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동 수에 미설치 건물의 평균면적(가정)을 곱하여 도출된 금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함

3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(대안)」(의안번호 제2126224호) 제안이유
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,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특히,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, 초·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- 스프링클러는 ‘간이스프링클러’로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이의 단가는 소방청에서 제출한 유사사례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설치대상은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외의 시설이므로 완화된 소방설비인 ‘간이스프링클러’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 - ‘교육시설’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단가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, 본 추계서에서는 소방청에서 제출한 ‘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사업’에 사용되었던 단가를 준용함
 -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%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⁴⁾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2025년 2월이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‘국공립 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와 국공립 유치원’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의 소요비용을 추계
- (대학교)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 중 (간이)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184개 동⁵⁾으로, 본 추계에서는 해당 건물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전체 필요면적의 1/2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 - (유치원)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중 (간이)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79개 동⁶⁾으로,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건물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전체 필요면적의 1/2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 -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단가는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‘보건복지부 의료

4) 소방청에서 제출한 ‘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사례’에서 국비:지방비:자부담 비율 (30%:30%:40%)이었다는 점과 추가설치 대상이 국공립시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 비율 제외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가 된다고 가정하였으며, 이때의 비중은 50%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

5) 교육부 제출자료(2024년 7월 기준)

6) 교육부 제출자료(2024년 10월 기준)

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사례⁷⁾를 준용하여 계산

- 소방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면적당 설치공사비 지원단가는 2017년 당시 60,000원이었고,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도출된 2025년과 2026년의 단가인 71,800원과 73,200원을 본 추계서의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로 추정함
-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 339억원, 2026년 345억원으로 총 684억원으로 추정됨

[표 2] 현행 소방시설법령상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시 추가재정소요 : 2025~2029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국공립 대학교 기숙사·합숙소	33,021	33,665	—	—	—	66,687	13,337
국공립 유치원	859	854	—	—	—	1,712	342
합 계	33,880	34,519	—	—	—	68,399	13,680

주: 1)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은 교육부가 제출한 국공립대학교 학생기숙사와 국공립 유치원 중 (간이)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동수에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]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인 연면적 5,000㎡(대학교기숙사), 300㎡(유치원)미만 중 최댓값을 적용
 2)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단가는 소방청에서 제출한 지원사업 단가를 준용함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의 간이스프링클러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
- 의무설치될 소방시설의 종류 및 의무설치대상 교육시설의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

7) 해당 사업은 개설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) 중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소규모 병원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에 ‘간이스프링클러’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